어린이집 자체교육용

아동학대 예방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CONTENTS

Ⅰ. 아동학대의 이해 / 01

1. 아동학대의 개념 · 01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 02
3.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 · 05

Ⅱ.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자세 / 06

1. 보육현장에서 삼가야 할 대화 유형 · 06
2. 하루일과에서 살펴 본 상황별 바람직한 교사 역할 · 08
3. 신고의무자로서 보육교직원의 역할 · 19

부록 1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용 체크리스트 · 24

부록 2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원장용 체크리스트 · 25

부록 3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27

부록 4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29

Ⅰ.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여 협약 당사국이 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2000년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의 법적 개념을 마련하였다.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아동학대 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 • 아동복지법상 범죄(신체적, 정신적, 성적학대 및 방임학대)
> •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죄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근 거	내 용
제2조제4호 파목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제2조제4호 하목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은 형법보다 가중처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및 방임으로 나누어지며, 학대 유형별 금지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다. 유형별 학대 행위의 구체적인 예시[1] 및 어린이집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례와 판례[2]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학대

구분	내 용
금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구체적 예시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닮, 물에 빠트림 등) •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발생 사례 및 판례

사례1 학대상황	판결
• 아동들에게 간식을 억지로 먹임. 또한 양손으로 아동의 양쪽 볼을 잡고 흔들었고 주먹으로 머리를 두 대 가격하였으며, 손바닥을 펴 아동의 엉덩이를 때린 후 검지와 중지를 굽혀 코를 잡고 두 번 흔듦	징역 1년 2개월

사례2 학대상황	판결
• 아동들의 손을 잡아 바닥에 강하게 앉히고, 손으로 팔, 허벅지, 이마를 때림	사회봉사·수강명령 120시간

1) 구체적 예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 참고
2) 실제 발생사례 및 판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

2) 정서학대

구분	내 용
금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구체적 예시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발생 사례 및 판례

사례1 학대상황	판결
• 아동에게 “새끼야”와 같은 욕설을 사용함 • 아동이 울며 아프다고 이야기를 할 때 “아픈데 어쩌라고”, “아이 잘한다. 울어라. 울어라”라고 말하며 언어적으로 위협함	수강명령 40시간

사례2 학대상황	판결
• 아동이 늦게 식사를 하고 잔반을 남겼다는 이유로 교사 앞에서 일어서서 식사를 하게 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함	상담위탁 1년

3) 성학대

구분	내 용
금지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학대 행위
구체적 예시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 관계 장면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처벌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방임

구분	내 용
금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구체적 예시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발생 사례 및 판례(방임과 신체 및 정서학대가 함께 발생한 중복학대 사례임)

사례1 학대상황	판결
• 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사와 간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음 • 아동을 발로 밀치거나 머리를 치는 신체학대와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그는 정서학대도 함	벌금 300만원

사례2 학대상황	판결
• 낮잠시간에 몇 아동이 잠에 들지 않은 상황, 아동을 안고 달래는 상황, 아동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핸드폰으로 웹툰·게임·인터넷 서핑을 함 • 영아의 팔을 잡고 힘으로 아동을 세게 일으키거나 거칠게 뒤집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신체학대도 함	벌금 200만원

3.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3)]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4.9.29.)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 및 신고의무가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2014년 이후 피해아동 발견율 및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 Ⅰ-1 ▌ 연도별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사례 건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아동학대 일반 현황	6,403 건	6,769 건	10,027 건	11,715 건	18,700 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현황	110 건	217 건	295 건	427 건	587 건
전체 대비 어린이집 발생비율	1.72 %	3.21 %	2.94 %	3.64 %	3.14 %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3.14%였으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 특성 없음 →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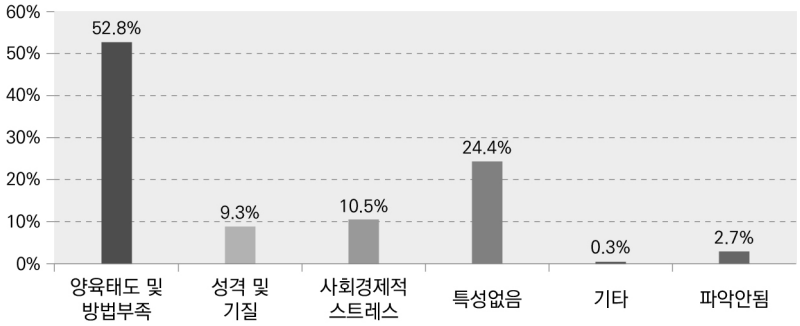

그림 Ⅰ-1 ▌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

보육교직원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인한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보다 일과 운영을 중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 일과 운영을 방해하는 아동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하여 아동의 행동을 제한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거나 일방적 지시 등이 발생하여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을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당하는 수직적 관계로 보는 경우, 따끔하게 야단치는 강압적 훈육 등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수평적 관계로 대하는 보육교직원의 태도가 필요하다.

3)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a).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b).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심층분석」

Ⅱ.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자세

1. 보육현장에서 삼가야 할 대화 유형

대화유형	예 시	영유아에 대한 영향
명령, 지시	• “이것 좀 들어!” • “남 참견 말고 네 거나 그려.” • “빨리 장난감 치워”, “싸우지 마라.”	명령과 지시 중심의 대화는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하며, 남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의타심을 키우게 한다.
욕설 하기	• “어이구, 먹는 꼴 좀 봐라! 완전 돼지 같네!”	실제로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부모나 교사가 있다. 칭찬은 아이들의 영혼에 산소를 넣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에 반해 욕설은 아이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아이들을 분노하게 만들므로 지양해야 한다.
경고, 주의, 위협	• “열 셀 동안 카펫에 모이지 않으면...” • “조용히 하지 않으면 오늘 바깥놀이 없을 줄 알아!” •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혼자 놔두고 간다.” • “싸우면 애기 반에 보낼 거야.” • “너! 이렇게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이따가 너희 엄마가 데리러 오실 때...” • “장난감 정리 안 하면 모두 치워 버릴 거야.”	여기엔 그대로 따르지 않을 땐 벌을 주겠다는 뜻이 들어있다. 이런 말투는 권위에 대한 저항감, 적개심을 갖게 하고, 벌을 피하려는 도피 또는 회피 행동을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친밀감을 상실하게 한다.
비판, 비난, 조소, 모욕, 우롱	• “문에다 더럽게 손자국을 냈구나! 왜 매일 이 모양이니? 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선생님이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 • “너처럼 맨 날 늦는 게으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니?” • “글쎄 너는 그 나이가 되도록 젓가락질을 못하는 거니?” • “네 나이가 몇인데? 너처럼 ○○을 지지리도 못하는 애는 처음 봤다.” • “아직도 멀었어.” • “넌 어째 그 모양이니?” •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생각이 없는 아이야.” • “바보처럼 그것도 못해?” • “이걸 그림이라고 그려놓은 거야? 발로 그렸니?”	아이의 말이나 행동을 어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내리는 말이다. 반항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기 쉽고, 자기 비하적, 자기 조소적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며 적극적 사고나 행동을 피하게 되고 창의적 사고를 못하게 된다. 특히 아이의 행동에 창피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창피를 주는 것은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다.
해석, 분석, 진단	• “네 녀석이 화내는 건 분명 거짓말이 탄로 나서 당황했기 때문이야.” • “네가 잘못해놓고 겁이 나니까 말을 더듬고 있는 게 분명해.” • “선생님을 골리려고 그랬지?” “도대체 네가 그러는 이유가 뭐야?”	아이의 감정에 충분한 이해 없이 단정해 버리는 것도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이들은 훈계만 하고 단정하는 어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다.

대화유형	예 시	영유아에 대한 영향
비교 하기	• “왜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는 거니? 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 “○○야 너도 네 친구들처럼 싹싹하고 예의 바를 수 없니?” • “○○ 좀 봐라” “○○ 반만큼이라도 따라 해봐”	비교는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성인의 일정한 잣대 때문에 생겨난다. 어른의 말에 반감을 갖게 하고, 열등의식을 갖게 하며 상대 아이에게 적개심을 갖게 한다.
교사 주도로 일방적인 서약,약속 정하기	• “오늘 제 시간 안에 이것 못하면 바깥놀이 못 나간다고 했지? 그러니 이거 다할 때까지 못 나가는 줄 알아!” • “현장학습 때 장난친 사람은 다음에 다시 안 데려간다.”	어른 주도로 일방적 약속을 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의 상황이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약속이 아니라 어른의 일방적인 의사 전달일 뿐이다.
유아 감정 부정하기	• “그만 좀 울어라. 사내 녀석이 울긴!” • “그따위 일로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이의 감정은 어른의 판단에 의해서 평가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훈계, 설교, 도덕적 충고	• “그건 착한 아이가 할 짓이 아니야.” • “나 같으면 당장 ○○에게 사과하겠다.” • “가위로 자르면 되지 않니!”	도덕적인 충고를 하지만 아이들이 어른의 의도대로 도덕적 감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오히려 이런 말들은 아이들의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감을 느끼게 만든다.
논리적으로 따지기	• “내가 분명 긴 바늘이 6자에 갈 때까지 밥을 다 먹으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했어야지 않니? 옆에 ○○가 자꾸 말 시켜서 못 먹었다는 것이 이유가 될 것 같니?”	간혹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거나 실수한 것에 따지기를 좋아하는 어른이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른을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대화는 아이와 어른과의 관계에 갈등을 증폭시키고 아이들의 행동의 변화보다는 그럴듯한 변명을 고민하게 만든다.

2. 하루일과에서 살펴 본 상황별 바람직한 교사 역할

1) 등원 및 맞이하기

상황	연령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교사역할
양육자와 분리가 어려운 경우	0-1세	(엄마와 헤어지기 힘들어 하는 영아를 엄마와 분리 할 때) • "이러면 엄마 힘들지?" • "씩씩하게 헤어져야 착한 친구지?"	엄마와 함께 있고 싶은 영아의 마음을 헤아려 따뜻한 스킨십을 하며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해준다.
	2세	(양육자와 헤어지기 힘들어하는 영아가 있을 때) • "울면 애기되는데? 울음 뚝 그쳐요."	영아의 정서를 충분히 인정해 주고, 부모와 만날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	3세	(유아가 기분이 좋지 않게 등원 했을 때) • "왜 이렇게 애기처럼 울어요?" • "형님처럼 와야지"	유아의 기분을 묻고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를 들어주고 휴식하거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눈다.
	4-5세	(수줍어서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는 유아가 있을 때 경우) • 빨리 들어오기를 재촉하거나 • "안 들어오고 뭐해?"	등원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유아의 감정을 충분히 인정해 준다. 함께 안아주고 토닥여주며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한다.
인사	4-5세	(인사를 하지 않고 등원하는 유아가 있을 때) • "인사도 안하니?"	교사가 먼저 인사하며 따뜻하게 맞이하며 (충분한 스킨십)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어제 있던 일을 이야기 하는 경우	3세	(유아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할 때) • "선생님이 지금 친구들 물건 정리하느라 바쁜 거 보이지?"	유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호작용하여 준다.
	4-5세	(유아가 어제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할 때) • "○○야, 그렇게 우물쭈물 말하니까 친구들이 하나도 못듣네?"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 "○○아, 선생님이 지금 ○○이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고 들어주고 싶은데, 지금은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도 맞이해야 하는데 조금 뒤에 들려줄 수 있겠니?" 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한다.
소지품 정리	3세	(가방이나 옷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유아가 있을 때) • "형님이니까 혼자 해봐"	교사가 부분적으로 도와주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5세	(가방, 옷, 수첩 등 정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아가 있을 때) • "다른 친구들 정리할 때 뭐했니?"	정리를 하고 다른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준다.

2) 자유선택활동시간

상황	연령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교사역할
활동을 안내하는 경우	0-1세	(인형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에게 놀이방법을 안내할 때) • "자, 이제 인형가지고 혼자 놀아~"	"○○는 아기인형을 업고 주고 싶구나. 자, 포대기로 업혀 줄게"하며 인형을 가지고 놀이 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4-5세	(활동을 어려워하는 유아가 있을 때) • "다른 친구들은 혼자서도 잘하는데, 넌 이것도 못해?"	"어떤 부분이 어렵고 잘 안되니? 먼저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땐 선생님이 도와줄게" 하며 유아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해주고 교사가 해주기보다는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요구가 있는 경우	2세	(영아가 함께 놀이하자며 요구를 해왔을 때) • "선생님은 일해야 하니까 친구랑 놀아."	자유놀이시간에 교사는 영아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여 영아의 발달 정도나 흥미를 파악한다.
	4-5세	(유아가 도움을 요청할 때) • "형님인데... 혼자 해야지."	유아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고 수용해준다.
놀잇감으로 갈등 상황에 있는 경우	0-1세	(놀잇감을 가지고 영아들끼리 갈등상황에 놓여있을 때) • "너희들 또 싸우니? 이러면 너희들은 놀이할 수 없겠다."	놀잇감의 개수를 충분히 준비하여 영아들의 놀이 상황 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함께 놀이할 때 방법을 이야기 해 준다.
	3세	(서로 같은 교구를 가지고 논다고 다툴 때) • "자꾸 싸우면 동생 반 줘버릴 거야."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나누어 놀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대화를 하여, 유아들 스스로 규칙을 정해 놀이 할 수 있도록 한다.
	4-5세	(놀잇감을 친구에게 양보하지 않는 유아가 있을 때) • "그거 친구에게 얼른 나눠줘. 욕심 부리면 놀이 못해."	양보를 해야 하는 이유와 친구와 놀잇감을 나누어 사용했을 때의 좋은 점을 이야기 해 주고 유아가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관심받고 싶어하는 경우	3세	(만든 작품을 선생님께 자랑하는 유아가 있을 때) • "어, 어~" 하며 무성의한 반응이나, • 유아가 부르는데 못 들은 척할 때	"와~~멋지게 만들었는데? 역시 ○○이는 대단한 걸~" 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한다. 유아에게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1:1로 돌아가며 모든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준다.
	4-5세	(유아가 "선생님 이것 봐요." 라고 작품을 자랑했을 때) • "그래..."라고 건성으로 답하기	유아의 작품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주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3세	(다른 친구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이나 안전사고가 유발될 행동을 하는 유아가 있을 때) • 타임아웃을 적용하거나, • "미워할거야, 못난이야."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으로 상호작용 방법이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황	연령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교사역할
	4-5세	(교실에서 뛰어다니며 놀이하는 유아들이 있을 때) • "교실에서 뛰어다니면 안 되지~ 선생님이 몇 번이나 이야기 하니?"	뛰어다니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과, 친구들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해준다.
기타	4-5세	(다른 활동은 하지 않고 한 가지 활동만을 지속적으로 하는 유아가 있을 때) • "너만 그 놀이하면 다른 애는 어떡하니?"	유아의 관심활동을 인정해주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의 활동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4-5세	(지나치게 인지적인 활동(글자쓰기, 조형활동)을 싫어하는 유아가 있을 때) • "이런 거 잘해야 학교 가는 거야."	유아가 관심 있어 하는 놀이를 인정해 주고,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인지적인 활동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4-5세	(교실에서의 소모품을 함부로 쓰는 유아가 있을 때) • "너만 그렇게 많이 쓰면 다른 친구는 뭘 쓰니?"	아껴 써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정리정돈

상황	연령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교사역할
정리 하지 않는 경우	0-1세	(정리를 안 하는 영아에게 많은 양의 놀잇감 정리를 시킬 때) • "○○는 또 정리 안하는 구나." • "다음에 놀이하지 마세요." • "제자리가 어딘지 모르니?" • "잘 정리해봐."	장난감 바구니를 제시하고 "우리 장난감을 집에 넣어 주자." 하면서 정리 바구니에 담아 보도록 한다. 교사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정리해 본다.
	2세	(놀잇감을 정리하지 않은 영아가 있을 때) • "정리도 못하니? ○○는 정리에 방해가 되니 그냥 앉아있어, 정리 안할 거면 놀이도 하지 말도록 해. 우리는 정리하고 재밌는 거 할건데 ○○는 재밌는 거 못하겠다."	활동을 정리하고 다른 활동으로 전환할 때는 미리 알려주어 놀이를 마무리 짓도록 배려한다. 놀잇감을 손에 쥐어주고, 교사와 함께 정리 할 수 있도록 한다.
	4-5세	(정리를 안 하는 유아에게 적정선을 제시할 때 옆과 같이 상호작용한다.)	유아와 함께 어떤 영역의 어떤 교구를 얼만큼 정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정리하기 시작하며, 차츰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
	4-5세	(활동 후 정리하지 않는 유아가 있을 때) • "정리하지 않는 것을 보니 정리하는 방법을 모르나봐. 아가 반에 가서 다시 배우고 와야겠구나."	정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친구들과 함께 정리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리방법을 모르는 유아의 경우 교사가 함께 도와주어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를 방해하는 경우	3세	(정리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유아가 있을 때) • "친구들은 다 정리하는데 너만 뭐해? 왜 놀고 있는 거야? 빨리 정리해."	친구와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교사가 함께 정리하는 것을 도와준다.
	4-5세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던지고 정리를 방해하는 유아가 있을 때) • "○○야 블록을 던지면 어떡해! 다른 친구들은 정리하고 있잖아 너도 얼른 정리해!" • "정리 안하면 다음활동 못한다, 장난감 정리 안하면 다른 반 줘 버릴 거야."	친구에게 방해가 되고 위험이 되는 일은 제지하고 다시하면 교사와 함께 정리를 하도록 하고, 칭찬을 하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 스스로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준다.

4) 대·소집단활동

상황	연령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교사역할
떠드는 경우	3세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와 떠드는 유아가 있을 때) • "자꾸 떠들거니? 친구들한테 방해되잖아." • "생각하는 의자에 혼자 앉아 있어라."	유아가 집중할 수 있도록 손유희로 집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3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말을 하는 유아가 있을 때) • "선생님이 말씀 끝나면 얘기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니?"	유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어보고 수업을 진행한 후에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 한다.
	4-5세	(수업시간에 우스꽝스러운 말을 하면서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흐려놓는 유아가 있을 때) • "너 때문에 방해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밖에 나가, 수업 하지 마." • "야, 너 조용히 해, 떠들지 마세요." • "집중! 합죽이가 됩시다. 합!"	"○○이는 ○○가 재미있나보구나, 그런데 지금 ○○이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에게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아.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해주면 어떨까?" 하며 유아가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적절히 반응해주며 상황에 대해 이해시켜준다. 또한, "너, 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유아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름을 부른다. 유아들에게 지시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고, 유아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유발을 시켜준다.
	4-5세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선생님 목소리 보다 크게 떠드는 유아가 있어 수업에 방해를 받을 때) • "친구들 방해하면 같이 놀 수 없어"	유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어보고 수업을 진행한 후에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 한다.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경우	3세	(수업시간에 바르게 앉아있지 않는 유아가 있을 때) • "누가 선생님 안보고 누워있니?" • "얘들아 ○○ 좀 봐라. 애기처럼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구나"	바르게 앉아 있는 유아를 칭찬하여 바르게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한 후, 바르게 앉을 때 격려와 칭찬으로 강화한다.
	4-5세	(자세가 바르지 못한 유아가 있을 때) • "똑바로 앉아라."	어떤 자세가 편안하고 바른 자세인지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여 편안히 앉을 수 있도록 하고, 바른 자세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기타	4-5세	(수업도중 화장실이나 물을 마시러 나가려는 유아들이 있어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때) • "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수업도중 교실 밖을 나갈 때는 조용한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기로 미리 정하여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
	4-5세	(유아가 질문했는데 대답에 해주지 못하는 상황일 때 옆과 같이 상호작용한다.)	"○○아, 선생님이 지금 ○○이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고 들어주고 싶은데, 지금은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도 맞이해야 하는데 조금 뒤에 들려줄 수 있겠니?" 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되도록 유아들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수용하여 주고 상호작용 해준다.

5) 점심시간

상황	연령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교사역할
자리 정하기	0-1세	(계속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을 고집하는 영아에게) • "너 또 그 자리에 앉는다고 우는 거니? 왜 그 자리에만 앉는 거야?"	앉고 싶은 자리를 고집하는 영아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배려한다.
	3세	(식사시간에 자리를 정할 때) • "선생님이 앉으라는 자리에 앉으세요."	유아가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를 선택해서 앉을 수 있도록 한다.
식사 태도	0-1세	(지나치게 돌아다니며 식사하는 영아를 지도할 때) •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안 돼" • "저기 ○○는 밥 안 먹고 돌아다니네~" • "얘들아 저렇게 돌아다니면 되니?"	돌아다니며 먹는 영아는 조금씩 돌아다니는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돕는다. "○○야 우리 2번만 앉아서 먹어 볼까?" 영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먹이지 말고 영아들을 불러 자리에 와서 먹도록 한다.
	4-5세	(점심이나 간식을 먹지 않고 떠들거나 장난만 치는 유아가 있을 때) • "넌 애기야? 밥을 혼자 못 먹니?" • "밥 입에 넣어, 얼른 삼켜." • "밥 다 먹을 때까지 이야기 하지 마."	유아가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친구들과 음식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스스로 먹어 볼 수 있도록 배려한다. 단, 음식물이 입 안에 남아있는 경우 음식물을 삼킨 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식사 시간의 예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4-5세	(음식을 손으로 먹는 유아가 있을 때) • "애기처럼 손으로 먹을 거야?"	가정과 연계하여 젓가락과 숟가락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젓가락이 어려울 경우 포크를 사용하도록 수정한다.
음식을 흘리는 경우	0-1세	(음식을 많이 흘리며 먹고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영아가 있을 때) • "또 흘렸네, 잘 먹어야지."	영아가 적절한 양을 먹을 수 있도록 배식을 해주고,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음식을 흘리지 않도록 바르게 앉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흘린 음식이 있을 시에는 먹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교사가 신속하게 정리를 도와준다.
	2세	(음식을 많이 흘리며 먹는 영아가 있을 때)	음식을 흘리지 않도록 바르게 앉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흘린 음식이 있을 시에는 영아가 스스로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영아가 힘들어 할 때에는 교사가 정리를 도와준다.
	4-5세	(식사 후 주변에 떨어진 음식물을 정리해야 할 때) • "네가 먹었던 건데 네가 정리해야지."	식사 후 정리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어려워하는 유아들에게는 교사가 시범을 보이며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황	연령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교사역할
늦게 먹는 경우	3세	(늦게 먹는 유아가 있을 때) • "너만 남았어, 얼른 먹어야지"하며 "아기반에 가서 먹어야겠다."	유아가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고 기다려준다. 또한 먹을 수 있는 양을 함께 정한 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4-5세	(음식을 너무 늦게 먹는 유아가 있을 때) • "오늘도 또 제일 늦게 먹을 거니?"	교사가 친구들의 속도를 맞추어 먹을 수 있도록 언어적 촉진을 하며 유도하여 준다.
먹기 싫어 하거나 편식 하는 경우	3세	(음식 먹기 싫어하는 유아가 있을 때 억지로 먹이며,) • "이거 다 먹어야 놀이할 수 있어." • 또는 먹기 싫어하는 음식 더 주는 행동	다 먹지 않아도 됨을 설명하면서 음식이 유아에게 주는 좋은 영향을 설명하고 유아의 의사를 물어본 후 존중해준다.
	4-5세	(좋아하는 반찬만 먹고 더 달라고 하는 유아를 지도할 때) • "이거 다 먹어야 더 줄 거야."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고,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지 않고 소량씩 맛을 보고 더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음식 동화책을 보여주어 다양한 음식에 골고루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4-5세	(음식을 편식하여 먹지 않는 유아가 있을 때) • "음식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음식을 배식할 때 유아가 먹을 수 있는 양을 먼저 조절하여 교사에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편식하는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유도한다. "이거 조금만 주세요, 많아요, 덜어주세요." 등
식사 중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경우	2세	(식사를 모두 마친 영아 중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영아가 있을 때)	자유롭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되, 한 번에 많은 영아가 함께 가지 않도록 한다.
	3세	(식사를 모두 마친 후에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다는 유아가 있을 때) • "식사 전에 다녀오라고 했는데 너는 왜 말을 안 듣니?"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유아를 다녀오게 한 후, 식사시간을 마치고 대집단으로 모여 유아들과 식사 전이나 후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제안한다.

6) 실외 및 견학활동

상황	연령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교사역할
더 놀고 싶어 하는 경우	2세	(실외놀이가 끝난 시간에 더 놀고 싶어 하는 영아가 있을 때) • "너 혼자 여기서 놀이해, 우리는 들어 갈 거야." • "너 자꾸 이러면 경찰아저씨에게 잡아가라고 전화할거야."	영아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더 놀이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주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탈하는 경우	3세	(친구와 줄을 서지 않고 경로 이탈하는 유아가 있을 때) • "자, 앞 친구 보고 줄 맞춰서 가야지." • "앞 친구 어깨에 손 올리고 앞에 보면 가자."	경로이탈이 잦은 친구는 교사와 함께 손을 잡고 앞에서 같이 걸을 수 있도록 한다.
	3세	(관찰하고 견학하는 중 뛰어 다니는 유아가 있을 때) • "선생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 혼자 여기 있을 거야?"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사가 반복적으로 이름을 불러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현장학습을 나가기 전 유아들과 "선생님과 즐겁게 현장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며 이야기 나눈다.
기타	3세	(체험활동을 하지 않고 거부하는 유아가 있을 때) • "이게 뭐가 무서워? 애기들도 다하는데."	아동이 거부하면 교사와 함께 체험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험해보는 것을 거부하면 억지로 체험하지 않고 눈으로만 관찰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함께 설명하여 준다.
	4-5세	(교사의 설명을 듣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두는 유아가 있을 때) • "○○는 저기 무서운 아저씨와 함께 있어." • "○○는 여기 있어, 우리 먼저 갈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규칙을 잘 지켜야 함을 이야기 해주고 실내견학지에서의 약속을 정한 후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한 뒤 교사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어 이야기를 나눈다.
	4-5세	(매번 똑같은 친구와 짝꿍을 하려고 하는 유아가 있을 때) • "너만 맨날 네 생각대로 하니?"	친구들과 골고루 짝을 하면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가끔은 스스로 자유롭게 짝꿍을 하고 싶은 친구를 고를 수 있도록 한다.
	4-5세	(사진 찍을 때) • "웃어요. 여기 봐, 가만있어."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도록 하며 "멋진 포즈, 웃는 얼굴" 등의 말로 유도하여 사진을 찍는다.

7) 낮잠시간

상황	연령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교사역할
애착 물건이 있는 경우	0-1세	(장난감(손수건)을 안고 자는 영아가 있을 때) • "주세요~ 치우고 자야지." • "잘 때는 이런 거 정리하라고 했지?"	편안한 옷을 입고 양말을 벗고 영아가 좋아하는 장난감(손수건)을 안고 잠을 잘 수 있게 돕는다. "○○가 장난감(손수건) 찾는구나. 선생님이 장난감(손수건) 줄게요".
잠을 안자거나 못자는 경우	0-1세	(잠을 못자는 영아가 있을 때) • "경찰 아저씨 데려 가세요." • 이불을 머리위로 덮은 후 토닥인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고 영아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 돕는다. 기저귀를 확인해보고 깨끗이 갈아주어 낮잠을 잘 수 있게 도우며 영아의 잠자는 습관을 고려하여 이불은 적당히 덮어준다. 잠을 못자는 영아는 교사와 함께 조용한 놀이를 한다.
	2세	(장난을 치거나 이야기를 하며 낮잠을 자지 않는 영아가 있을 때) • "○○는 아기반에 가서 자고 와야겠다,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야기 하면 친구 자는데 방해가 되요."	낮잠을 잘 때는 잠이 쉽게 들 수 있도록 방을 어둡게 하여 안정된 분위기를 마련해 준다. 교사도 함께 누워 영아가 안정되도록 하며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동화를 읽어준다.
	3세	(장난을 치거나 이야기를 하며 낮잠을 자지 않는 유아가 있을 때) • "지금 안자고 있다가 늦게 잠들어서 깨울 때 안 일어나려고 그러지? 자 빨리 자야지~ 언제까지 떠들 거야?"	잠이 잘 들 수 있도록 교실 환경(조명, 음악 등)을 조성해주고 토닥여 주며 돕는다. 잠을 안자는 유아가 조용히 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수면 시간을 조정한다.
기타	0-1세	(울면서 일어나는 영아가 있을 때)	자고 일어난 영아를 "잘 잤니?"하면서 따뜻하게 안아준다.
	3세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를 할 때) • "자 이제 네가 한번 이불 정리해봐 이제는 혼자 할 줄도 알아야지~"	이부자리를 정리할 때 도움이 필요한 유아는 교사가 돕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아들은 격려해준다

8) 배변 및 화장실

상황	연령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교사역할
배변 뒤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	0-1세	(응가를 한 영아가 있을 때) • "또 응가 했니?" "집에서 하지" • "너무 많이 먹었나 보네" • "선생님이 지금 바쁘니까 조금있다가 봐줄게." 라며 기저귀를 바로 갈아주지 않고 "조금 이따 해 줄게 기다려봐~"	"○○가 응가를 했구나~ 우리 깨끗이 씻자~" 갈아주며 응가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하며 상호작용을 한다. 또한, 기저귀는 수시로 확인하고 영아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자주 갈아준다.
	0-1세	(표현을 못하는 영아가 실수(응가 또는 쉬)를 했을 때) • "응가(쉬)를 했으면 말을 해야지~" • "아휴... 힘들어 죽겠네."	영아를 인정해 주고, 모든 사람의 배변을 자연스러운 것이며 좀 더 크면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며,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준다. 또한, 바로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4-5세	(볼 일을 보고 뒤처리를 잘하지 못하는 유아를 도와주어야 할 때) • "네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거나 • "아우 냄새,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니."	유아의 자유로운 배변을 인정하고 이해해주며 유아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어 유아가 스스로 뒤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방법을 알려준다.
물장난 하는 경우	2세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에 간 영아가 손을 씻지 않고 물장난만 하고 있을 때) • "누가 물장난하라고 했니?"	손을 씻는 방법을 설명하며 시범을 보여주고 함께 손을 씻은 후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3세	(화장실에서 물장난을 하여 옷이 물에 젖은 유아가 있을 때) • "애기처럼 물놀이 하는 친구네."	물에 젖었을 때 감기에 걸릴 수 있고 옷이 젖어 불편함을 언어로 표현하여 주고 다시 한 번 친구들과 화장실 사용할 때 물을 사용하여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한다.
기타	4-5세	(화장실에 간 유아가 화장실에서 친구와 싸우고 있을 때) • "화장실에서 친구랑 싸우고 있니?"	교사가 번갈아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며 화장실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고 정하여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4-5세	(양변기 사용하는 친구 몰래 들여다보는 친구가 있을 때) • "○○는 왜 화장실을 몰래 보니? 왜 친구를 몰래 봐?"	우리의 몸은 소중하고 엄마 아빠가 될 몸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이야기 하여주고 친구들이 부끄럽고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 준다. 또한 내가 그 친구라면 어떠한 기분일지 생각하며 이야기 나누도록 한다.
	4-5세	(양치질을 바르게 하지 않을 때) • "선생님이 바르게 사용하는 법 이야기 해줬잖아. 왜 배운 데로 안하니?"	교사가 함께 양치하며 바르게 양치하는 법을 설명하여 주고 어려워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지도하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9) 귀가지도

상황	연령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교사역할
장난감을 가져 가려고 할때	2세	(가지고 놀이하던 장난감을 집으로 가지고 가려는 영아가 있을 때) • "이렇게 가져가면 도둑 이예요."	장난감을 갖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주며, 함께 사용하는 물건은 어린이집에서 함께 사용해야함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3. 신고의무자로서 보육교직원의 역할

1) 신고의무

구분	내 용
신고 의무 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제63조제1항** • **신고의무자**: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의무사항**: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

사례	아동학대·방임 신고의무 위반 어린이집 원장 전국 첫 과태료 (경향신문, 2014.01.09.)
•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6세 원아의 어머니와 연락이 두절되었으나, 원장이 관할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어머니의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린 사실이 '24시간 어린이집' 합동점검 과정에서 밝혀짐	벌금 150만원

2) 신고의무자 교육

구분	내 용
교육 의무 규정	**「아동복지법」 제26조, 제75조** • **의무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 실시 후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제출 • **과태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 세부 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

3) 신고자 보호

구분	내 용
불이익 조치 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 ① 신분상실(파면, 해임, 해고 등)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아래의 불이익 조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당한 인사조치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평가,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어린이집 원장이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조치 시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정보 공개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됨
신변 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신변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4) 아동학대 신고 포상

구분	내 용
포상금 지급 대상	•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한 사건의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학대 판정, 처벌여부·행위의 지속성·집단적 행위(가담·방조·묵인) 여부에 따라 지급 ① 아동학대로 판정 또는 아동학대 사유로 시정명령 이상 처분 시 100만원 ②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500만원 ③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학대 행위가 다수 아동을 상대로 1개월 이상, 집단적(원장·보육교직원이 방조·묵인)으로 이루어진 경우 1,000만원

5) 신고에 따른 처리절차

신고의무자의 역할은 학대의심징후 발견 시 112로 신고하는 것이다. 연도별 신고의무자에 의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보육교직원의 신고현황[4]은 아래와 같다.

표 Ⅱ-1 ▌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의무자 신고현황	3,316건	3,706건	4,358건	4,900건	8,288건
보육교직원 신고현황	166건	223건	273건	309건	286건
전체대비 보육교직원 신고비율	5.01%	6.02%	6.26%	6.31%	3.45%

아동학대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서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판단 및 조치, 사례관리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

구분		내용 및 역할
신고자	학대 의심 징후 발견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신체적, 행동적 징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늘 건강상태를 살핀다. • 평상시와 다른 상흔, 감정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며, 의심사항은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아동학대 신고 (112)	•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신고한다. - 익명으로 신고 가능함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 조사	•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 원내의 독립된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 제공에 협조한다. • 필요한 경우 아동이 조사 상황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아동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교사가 아동조사에 참여하여 지원한다.
	사례 판단 및 조치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사례 판단 결과를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받은 아동학대 판단결과 뿐 아니라 피해아동 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위반 사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 8(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 시스템이나 등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될 수 있다.
	사례 관리 및 사후관리	•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진 후 사례가 종결되며, 사후관리를 통해 재학대 발생여부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 어린이집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찰하여 재학대 발생 및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4)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a).「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a).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_____(2017b).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심층 분석

보건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_____(201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영유아권리선서

우리는 보육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유지하고
영유아의 권리보호, 존중, 충족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가 차별 없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돕는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에게 충분한 영양과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가 자신의 욕구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의 발달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보육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 존중을 바탕으로 일체의 체벌을 포함한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보육활동에 부모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전문가 연계를 통해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년 월 일

보육교직원

부록 1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용 체크리스트

심리적 특성 체크리스트

□ 최근 1개월간 다음과 같은 생각이나 감정이 들었을 경우 해당 칸에 표시해 주세요.

	항 목	예	아니오
1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낀다.		
2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신체적인 피로를 느낀다.		
3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무기력하고 귀찮다.		
4	내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		
5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6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실수를 할까봐 두려움을 느꼈다.		
7	순간적으로 영유아에게 화가 날 때가 있다.		
8	영유아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힘들다.		

사용주기	주기적으로(최소 1개월) 자신의 심리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적용방법	아니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1개 이상 ‘예’ 체크	‘예’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함

자기 전문성 체크리스트

□ 최근 1개월간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경우 해당 칸에 표시해 주세요.

	항 목	예	아니오
1	아동행동지도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 (때리기, 소리 지르기, 방치하기 등)		
2	영유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거나,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지도하기 어렵다.		
3	영유아가 대집단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놀잇감을 정리하지 않을 때 지도하기 어렵다.		
4	영유아가 다른 친구를 방해하거나, 친구와 장난을 치거나, 싸울 때 지도하기 어렵다.		
5	영유아가 자주 울고 고집부릴 때 지도하기 어렵다.		
6	영유아가 실수(용변, 물 쏟기, 흘리기 등)를 할 때 지도하기 어렵다.		
7	영유아가 식사시간에 밥을 먹지 않거나 늦게 먹고, 편식을 할 때 지도하기 어렵다.		
8	영유아가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친구들의 잠을 방해할 때 지도하기 어렵다.		

사용주기	주기적으로(최소 1개월) 자신의 행동을 모니터링 한다.	
적용방법	아니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1개 이상 ‘예’ 체크	‘예’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함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b).「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심층 분석」

부록 2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원장용 체크리스트

교사 모니터링을 위한 체크리스트

□ 최근 1개월간 보육교사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칸에 표시해 주세요.

	항 목	예	아니오
1	‘기저귀나 옷이 더러워졌는데 그냥 두기’ 등 영유아의 기본적 생활 요구를 방치하는 행동		
2	사람들 앞에서 무분별하게 속옷을 갈아입히거나 용변을 보도록 하는 행동		
3	‘영유아 혼자 울고 있어도 놔두기’, ‘아프다고 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등 영유아의 요구를 모른 척 내버려두는 행동		
4	‘놀잇감 파손’, ‘더러운 화장실’ 등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을 알고도 방치하는 행동		
5	아동을 억지로 낮잠을 재우거나 싫어하는 음식을 먹이는 행동		
6	“똑바로 앉으려고 몇 번을 말했니?”. “넌 여기 있어 우리 갈 거야” 등 영유아를 언어적으로 위협하는 행동		
7	“얘들아, 저렇게 돌아다니면 되니?”, “오늘따라 필 꽂혔구나? 왜 이리 나대시나!” 등 비아냥거리거나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등의 행동		
8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못 놀아(먹지말자)” 등 영유아를 의도적으로 일과에서 배제시키는 행동		
9	“넌 생각하는 의자(빈 방)에 가 있자” 등 영유아를 과도하게 타임아웃 시키는 행동(5분 이상)		
10	“넌 맨날 친구들 얘기 안 듣고 니 이야기만 하니?” “밥 다 먹을 때까지 돌아다니지 마” 등 영유아의 행동을 막으려고 언어적으로 위협하는 행동		
11	‘째려보거나 무서운 눈빛으로 제압하기’, ‘세게 잡아당기기’, ‘많은 의자를 밀치기’ 등 고의로 영유아를 거칠게 다루는 행동		
12	“너도 얼마나 아픈지 꼬집혀볼래?” 등 영유아가 그대로 당해보게 하는 보복성 행동		
13	‘자로 책상치기, ’때리려는 시늉하기‘ 등 신체나 도구로 영유아를 위협하는 행동		
14	‘꿀밤주기’, ‘툭툭 치기’, ‘꼬집기’ 등 영유아를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동		
15	얼굴, 뺨, 등판 등을 손이나 팔, 자 등의 도구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		
16	“(자기 성기를 친구에게 보여주는 유아에게) 지금 뭐하는 거니? 그럴거면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주지. 애들아 여기 와서 봐봐” 등 영유아에의 성적 호기심이나 질문에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행동		
17	영유아의 성기나 신체를 과도하게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 등을 하는 행동		

사용주기	주기적으로(최소 1개월) 원장이 보육교사의 행동을 평가하여 컨설팅 자료로 활용한다.	
적용방법	아니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1개 이상 ‘예’ 체크	‘예’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함

어린이집 조직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 최근 1개월간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경우 해당 칸에 표시해 주세요.

	항 목	예	아니오
1	우리 기관은 동료교직원이 영유아에게 과도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때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의논한다.		
2	원장은 영유아에게 과도한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교직원에게 지도(재교육)를 한다.		
3	원장은 주기적으로 보육실을 참관하여 보육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준다.		
4	원장은 주기적으로 보고받은 보육일지 등을 검토하여 피드백을 준다.		
5	원장은 주기적으로 교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적절한 아동 지도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6	원장과 동료 교사들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한다.		
7	원장과 동료 교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며 협력한다.		
8	원장은 교직원과의 개별면담 등을 실시하여 공감 및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9	우리 기관은 부모들과 관계가 편안하고 상호간에 신뢰가 있는 편이다.		

사용주기	주기적으로(최소 1개월) 원장이 어린이집 조직문화와 환경을 평가하여 컨설팅 자료로 활용한다.	
적용방법	아니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1개 이상 '예' 체크	'예'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함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b).「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심층 분석」

부록 3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2018년 10월 기준)

시도	기관명	주 소	기관 대표번호
중앙	중앙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서계동)	02)701-0431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3층	02)772-9814~8
	서울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2길 7(대치동 961-17)	02)546-1736~7
	서울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6길 16(성내동 556-1)	02)486-3556
	서울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66길 9(수유동 410-293)	02)994-7480
	서울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2길 50(내발산동)	02)2064-2730~2
	서울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128 2~3층(봉천동)	02)851-2834~5
	서울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56가길 31 3층(군자동)	02)467-1827~9
	서울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03 우리은행 구로동지점 3층(구로동)	02)859-5432, 5678
	서울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시흥동)	02)894-2264~5
	서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859 공공복합청사 4층(상계동)	02)930-1944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2길 28(방학동 306-10)	02)3494-3341~2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62(답십리동)	02)2237-5800, 02)2247-5843~5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11(대방동 385-2 3층)	02)823-4567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1길 71(상암동 1686)	02)308-0202
	서울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구보건소 별관 우리들 1층(홍은동 425-3번지)	02)3217-9550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46(서초동)	02)598-9340, 02)596-9340
	서울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160(상왕십리동)	02)499-5675~6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10길19(하월곡동222-6)	02)918-8080~2
	서울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층(오금동 50번지)	02)449-0505(내선2번)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3층(신정동)	02)2646-7790~1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40길 5(신길4동 232-20)	02)833-6022, 6025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29 용산꿈나무종합타운 2층	02)749-9673~4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5가길 4(구산동)	02)351-3629/3630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1길 6-3(명륜3가동 147-1번지), 3~4층	02)737-0890/ 02)735-0850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길 5(신당동 292-60)	02)2263-2626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67길 10(망우동) 망우본동복합청사 6층	02)495-0030~1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62	051)866-0536~7
	부산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중앙로 110	051)991-0777
	부산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29	051)526-0756
	부산 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75-18(가야동)	051)936-7011
	부산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210번길 17(괘법동)	051)321-3389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24번길 22	051)866-7191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513번길 66-11	051)527-2446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371길 30(내당2동 52-4번지)	053)421-2346~7
	대구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53길 36	053)662-3521
인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수산동) 남동체육관 내 1층	032)431-4606~9
	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계산동) 사회복지회관 1층	032)556-5712~4
	인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9번길 10-18 4~5층	032)884-0756
	인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18번길 51, 2층(삼산동)	032)361-8653~4
	인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64(심곡동)	032)568-7234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청사 내 604호	032)715-8262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내 2층	062)714-3635~6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 동관1층	042)721-1256~7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	052)266-4173~4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51(달동 1322-9)	052)256-9508~10
	울산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 1길 61, 2층(전하동)	052)201-0961
	울산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1-18	052)246-0600
	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8길 66	052)275-1233

시도	기관명	주 소	기관 대표번호
경기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층	031)258-1485
	경기도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9, 4층(의정부동)	031)876-5767~8
	경기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5(화정동)	031)975-3314
	경기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2 가족여성플라자 4층(부림동)	02)6925-2526
	경기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성채로 78번길 7(소하 2동)	02)899-0163~4
	경기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회안대로 1404-1	031)765-6010
	경기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53번길 34(인창동 527-37)	031)566-2323
	경기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0, 3층(산본동)	031)393-0236
	경기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39(장기동)	031)985-1901
	경기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 어린이비전센터	031)528-4463~4
	경기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0	032)322-8686
	경기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96번길 30-1, 4층(복정동 667번지)	031)721-1640
	경기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24번길47 (정자동)	031)255-5682~4
	경기 수원시동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759번길 29(영통동)	031)273-6690~2
	경기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37, 3층	031)431-5682, 6358
	경기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155 안산대학교 채플관 B6호(일동)	031)415-2271~3
	경기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39 만안평생교육센터 2층(안양동)	031)383-5170~1
	경기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26(고암동)	031)8082-4225~6
	경기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670-2	031)374-5563
	경기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90	031)335-8690
	경기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22 여성회관 지하1층(오전동)	031)455-1853~4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8 덕암빌딩 3~5층(의정부2동 572-5)	031)853-5006~8
	경기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번길 38(중리동)	031)634-9842~4, 9846
	경기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문산행복센터3층	031)954-4800
	경기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성동로 11길 2(비전동)	031)692-7705
	경기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031)536-9632
	경기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4번길 125 6층	031)796-6579
	경기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도이리 산31-6번지)	031)8059-1640~2
강원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35(후평1동)	033)244-2660,4660,8660
	강원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용지각길 20번안길 3(3층) (포남동)	033)641-1382 033)642-138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16(종촌동, 종촌종합복지센터 1층)	044)865-0561
충북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410호(복대동)	043)239-8777~8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13-2(내덕동)	043)222-6660
충남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1층(의회동)	041)634-6234~9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 6로 127(차암동)	041)561-2821~2
전북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1 38 전라북도 여성일자리센터 2층(2-5)	063)276-8080~1
	전북 고창군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 2길 20	063)564-0862
	전북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30(1~2층)	063)911-0756
	전북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궁동로 43	063)859-4765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3길 61번길 2동 3층	063)905-6509
전남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2층	061)285-5455~6
	전남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율산길 27	061)749-4085
경북	경상북도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360	054)337-9939~40
	경북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1로 1길25	054)421-2471, 2470
	경북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역옆길 25(흥덕동 257-1)	054)701-2337
	경북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 포항시 평생학습원 407호(상도동)	054)256-2580,2,7
경남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두레관 4층	055)213-2471~5, 7
	경남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463번길 17(하대동)	055)749-5435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가음동 20-8) 창원시여성회관 창원관 4층	055)287-1216
	경남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9	055)934-0883~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마을북길 13-26 2~3층(해안동)	064)746-2211
	제주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동로22(법환동)	064)739-6275

부록 4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8년 10월 기준)

시도	기관명	주 소	기관 대표번호
중앙	중앙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6길 19(역삼동)	02-558-1391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수서동)	02-2040-4242
	서울 동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03	02-2247-1391
	서울 강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시정헌빌딩 2층(가양동)	02-3665-5183~5
	서울 은평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4층(응암동)	02-3157-1391
	서울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7가길 5, 4층(대림동, 태안빌딩)	02-842-0094
	서울 성북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1층(타운힐빌딩)	02-923-5440
	서울 마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신수동)	02-422-1391
	서울 동남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5층(문정동)	02-474-1391
	서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31	02-974-1391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아미동2가)	051-791-1391
	부산 동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젠시 903호	051-715-1391
	부산 서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화명대림타운상가 405,406호	051-711-1391
	부산 남부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41번길 11 삼환오피스텔 1503호(범일동)	051-791-1360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동인동3가) 2층	053-422-1391
	대구 남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9(송현동) 2층	053-623-1391
	대구 북부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25길 12-1(산격동)	053-710-1391
인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주안동)	032-434-1391
	인천 북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5층 504, 505호(계산동, 삼환1빌딩)	032-515-1391
	인천 남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4층(간석동)	032-424-1391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쌍촌동)	062-385-1391
	빛고을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97-2	062-675-1391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56(중촌동)	042-254-6790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 21(성안동)	052-245-9382
	울산 남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55번길 23	052-256-1391
경기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25번길 20(영화동)	031-245-2448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6 4층(도림빌딩)	031-874-9100
	경기 성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태평동)	031-756-1391
	경기 고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번길 11, 7층(행신동, 삼정프라자)	031-966-1391
	경기 부천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79 서호빌딩4층 405호(중3동 1058-4)	032-662-2580
	경기 화성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4, 4층(봉담읍, 송현빌딩)	031-227-1310
	경기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204호(금곡동, 다남빌딩)	031-592-9818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35	031-402-0442
	경기 용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9 505호(구갈동)	031-275-6177
	경기 시흥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대야동, 2층)	031-316-1391
	경기 평택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3 동방평택복지타운(소사동)	031-652-1391
	수원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3 동방평택복지타운(소사동)	031-8009-0080
강원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번길 35(후평1동)	033-244-1391
	강원 동부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5번길 33 2층(교동, 반트빌딩 2층)	033-644-1391
	강원 서부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7(명륜동)	033-766-1391
	강원 남부	강원도 동해시 부곡3길 20-9 2,3층	033-535-5391
충북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2번길 66-1(율량동)	043-216-1391
	충북북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118	043-645-9078
	충북남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19(옥천읍)	043-731-3685
충남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성정동)	041-578-2655
	충청남도 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84번길 55(취암동)	041-734-6640
	충청남도 서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0 충남보훈회관 1층(신경리 903)	041-635-1106
전북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서서학동)	063-283-1391
	전라북도 서부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 4층(갈산동 185-3)	063-852-1391
	전라북도 동부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향교동)	063-6351-139

시도	기관명	주 소	기관 대표번호
전남	전라남도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용당동)	061-753-5125
	전남 서부권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석현동)	061-285-1391
	전남 중부권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073, 2,3층(송월동)	061-332-1391
경북	경북 남부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395번길 24(성건동)	054-745-1391
	경북 북부	경상북도 안동시 밤적골길 20(율세동)	054-853-1391
	경북 동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25번길 12, 3층(대잠동)	054-284-1391
	경북 서부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1-5 3층(송정동 80-1 하나빌딩)	054-455-1391
경남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회원동)	055-244-1391
	경남 서부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상대동)	055-757-1391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2층(부원동)	055-322-139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59(노형동)	064-712-1391~2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2층(서귀동)	064-732-1391

기획/편집

성 명	소 속	직 위
마 미 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조 성 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사업팀	팀 장
윤 지 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사업팀	보육전문요원

자문

성 명	소 속	직 위
박 병 찬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주무관
이 완 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 수
김 흔 숙	인천성모병원 어린이집	원 장